

- 201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-

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2013. 5.

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

201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의 안	
번 호	

제안일자 : 2013. 5. .
제 안 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,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·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의회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,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· 활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한다. (2013. 6. 11 ~ 6. 19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(7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한다.

3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11690호, 2013. 3. 23) 제41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4425호, 2013. 3. 23)
제39조 ~ 제50조, 제52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
제2조, 제5조 등

201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,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·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의회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,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·활용하고자 함

2. 감사기간

- 2013. 6. 11(화) ~ 6. 19(수) [9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(부서)

- 마포구의회사무국

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운 영 위원회	[위원장] 서 종 수 [부위원장] 한 일 용 [위 원] 박 영 길, 유 동 균 조 남 진, 마 동 환 김 수 진	마포구의회사무국	운 영 위원회실	김은모	노영구

5. 감사일정

구분	일정	내용	비고
준비단계	2013. 5. 1(수)	○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	
	5. 3(금)	○ 감사계획서 수립, 채택 ○ 서류제출, 증인출석요구서 작성	
	5. 8(수)	○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○ 감사계획 통보	
	~ 5.24(금)	○ 행정감사 요구 목록 수합	
	~ 5.31(금)	○ 감사관계 자료 수합	
	~ 6.10(월)	○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	
실시단계	2013. 6.11(화) ~ 6.19(수)	○ 위원장의 감사선언 ○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-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○ 감사종료 선언	
감처사리 결단 과정	2013. 6.20(목) ~ 7. 4(목)	○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○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○ 감사결과 보고 (본회의) ○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	

6. 감사요령

- 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행정사항

- 가. 위원장은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.
- 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

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

(운영위원회)

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(증인)출석요구서

마포구의회 사무국장 귀하

마포구의회가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, 관계공무원(증언)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.

제출서류 요구 : 요구서류 목록 수합하여 제출기한 지정 별도 통보

관계공무원(증인)출석요구

1. 출석일시 :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정일시
2. 출석장소 :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지정장소
3. 출석대상 : 의회사무국장 (팀장 및 해당직원 등 포함)
4. 출석요구사유 :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. 끝.

2013년 5월 일

운영위원회 위원장